

| 의제별위원회_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예정) |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제도개선 논의

손동희 전문위원

발족개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으로 축소되고 기존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역시 21개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된데 따른 경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꾸려진 위원회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1주' 개념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변경한 데 있다. 예컨대, 주 5일 개념에서는 주 40시간 노동에 연장가능한 주12시간을 합하여 모두 52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여기에 통상 주말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모두 16시간이 추가될 경우 노동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개념을 7일로 볼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연장 노동시간 12시간을 합하여 1주 노동시간은 총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1주 개념에 빠져있던 주말 노동시간(16시간)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그 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 기한을 2022년 말까지 명시해놓고 있었지만, 지난 11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제8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본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의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노동시간 관련’ 의제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의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의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두 가지 유형의 단위기간 즉,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를 설정해 놓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이후, 이 두 가지 유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1주 최장 노동시간은 각각 60시간과 64시간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 52시간과 비교해 볼 때 각각 8시간과 12시간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핵심 의제는 ‘단위기간’ 즉,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를 최대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단위기간만으로는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장 수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시간의 확장성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와 연장노동에 따른 수당 등 임금 감소분의 발생이 수반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기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적용되던 '연속 휴게시간'의 보장 등 노동자 건강권 이슈와 임금보전 및 소득 불안정 문제 등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파생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다. 또한 제도의 도입 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조건 등의 간소화 문제도 있다. 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의제들이 즐비하지만 위원회내에서 중점 논의 의제와 시기 등의 조율을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구성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이철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위원(2)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민주노총(미정)
경영계 위원(2)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재근(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정부 위원(1)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공익 위원(3)	김강식(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간사(1)	손동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다. 노동계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에서 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추후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위원 교체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익위원과 관련하여 초기 이견이 있었으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3명이 공익위원으로 추천·구성되었다.

논의시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의 사회적 성격과 제도적 쟁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의 시한을 정해 두지는 않되, 참여 주체들 모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이 모아졌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시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지 않다. 위원회 참여주체들이 '집중논의와 신속한 결정'의 필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고민과 의미 있는 타협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향후 계획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여주체들의 자율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쟁점인 만큼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소지가 높다. 논의의 주기는 집중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매주 1회 '전체회의'와 필요시 '간사단 회의'나 '공익위원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논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